



증거인멸 · 자해 전력은 봤나... 법원이 김만배 구속 안한 이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검찰의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요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석방됐습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검찰은 그가 신학림前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직접 가

짜뉴스를 만든 것은 물론, 남육, 조우형씨에게도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심문은 통상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는 달랐습니다. 언론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의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비공개인 영장실질심사와는 달리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법원도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라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따로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 ‘가짜뉴스’는 혐의 아냐, 증거인멸 요소로만 주장

이는 검찰이 가짜뉴스와 관련한 새로운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씨의 기존 구속기간이 다돼 가는 상황에서 대장동 재판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작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7일이면 ‘범죄수익은닉’ 구속기간도 끝납니다. 이 때문에 기소된 대장동 관련 혐의 중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 즉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려 100억원 가량을 대장동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를 들어 다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검찰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혹은 발부’라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중인 혐의 일부를 근거로 추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언론에서 주로 보도됐던 김씨의 ‘가짜 인터뷰 지시’에 대한 검찰의 브리핑 내용도 범죄 혐의가 아닌 ‘증거인멸’ 부분에서 주장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날 ‘가짜 뉴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원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 재판 만나와도 구속하는데... ‘자해’ 전력은 고려했나

구속에 대한 법원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위와 같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그 이유만으로도 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차 발부하지 않은 것은 ‘별건수사를 위한 구속’이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강조한 ‘가짜뉴스’는 범죄 혐의가 아닌 증거인멸 요소이고 범죄 혐의인 ‘100억원 횡령’은 이미 재판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 합니다.

검찰은 이날 법원 결정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심문일에 검찰이 밝힌 김씨의 허위 인터뷰 지시 내지 관여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나올 만한 반응입니다.

다.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김씨는 작년 11월 석방 이후 자해 시도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가짜뉴스와는 별개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해는 재판에도 큰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치료를 이유로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재판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해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을 잃었다면 ‘공소기각’으로 그대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한 법조인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도 영장이 발부되는데, 그보다 훨씬 영향이 큰 ‘자해’를 실제로 시도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서 사건당사자들과 연락금지, 주거이전신고 등 여러

조건이 붙는 것과 다릅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재판부도 구속이 장기화된 부분을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민했겠지만,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제한없이 풀려나게 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일 검찰이 명예훼손 등 ‘가짜뉴스’ 관련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건처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법원은 발부 또는 기각결정을 하며 그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게 됩니다.

아직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김씨는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서게 될까요.

(출처/조선일보)